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법률 제17833호(시행 2021.7.6.) 및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3.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나.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사항 규정

1)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비상구 추락사고로 규정(안 제9조의6제1항 신설)

2) 안전사고의 보고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의6제2항 신설)

3)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회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 6)

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추가(안 제14조제2항 신설)

-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함.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부터 제4항 신설)

-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 대상 및 기간을 규정*함

*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업소로 하고,
공개기간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때까지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안전사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비상구 추락사고를 말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 제목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을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등 공개사항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이행업소”를 “미이행 업소의 공개 및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 특별조사 결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교육 이수
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4.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이력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그 기간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별표 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1항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아니	제8호	300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② (생략)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특별시·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u><신설></u>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u> ----- ----- -----.
	<u>제9조의6(안전사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비상구 추락사고를 말한다.</u> <u>② 다중이용업주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생략) <u><신설></u>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마약·대마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
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
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
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등
공개사항의 제한) -----
----- 미이행 업소의 공
개 및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
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

제18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
개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
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실
시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교육 이수

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4.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이력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그 기간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예방과	
연 락 처	(044) 205 - 7453